-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안 -

심 사 보 고 서

2005. 12. 15.
관광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1월 14일

○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4일

❑ **상정일자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12. 2 :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소방본부장 장 석 화)

❑ 제안 이유

○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 장학생 선발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 완화(안 제2조, 제4조)

○ 장학금액의 현실화(안 제6조)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완화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관광건설전문위원 윤기복)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자격 및 선발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액의 상향 조정 등 수혜의 폭을 넓힘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명의식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제6조의 조문 중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라는 규정은 모호하고 명확성이 없어 운영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 **수정 이유**

○ 조문 내용의 명료화와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선발) 제2항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한다.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12. 2.
제 안 자 : 송은섭 의원외

❑ 수정 이유

○ 조문 내용의 명료화와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선발) 제2항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한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선발) 제2항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여성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공.사립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대원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자(이하"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3년이상(타지역 경력포함)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이하 "특기 자"라 한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정하는 ---------- ---------- 국·공·사립고등학교 ---------- ---------- ---------- ----------. **제2조(장학생의 자격)**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범 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3.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장학생의 자격)** (개정안과 같음) 1.(개정안과 같음) 2.(개정안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 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방서·군(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관할 구역별 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 또는 군수(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 ---------- ---------- 소방서 ---------- ---------- ---------- ----------소방서장 ---------- ---------- --.	**제3조(추천)** (개정안과 같음)
제4조(선발) ①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군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1. ~ 3. (생 략) 4. 유공표창중 장관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 6. (생 략) 7.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8. 기타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제4조(선발)** ①소방서장은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 ---------- 1. ~ 3. (현행과 같음) 4. ---------- 소방서장 이상 ---------- ---------- 5.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7. (현행과 같음)	**제4조(선발)** ①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하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하며,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 ---------- ---------- --.	③(개정안과 같음)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소방서와 군(소방서 미관할구역)의 전체 의소대원수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별 대원수---------- --------- ----------5/100로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장학생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4:1로 유지되도록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역 및 의소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선발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장학금액)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 ----------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제6조(장학금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생 략) ②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2월 ---------- ---------- ---------- 다만 ----------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의 정지) ①---------- ----------각호 1---------- 1. ~ 2. (생 략)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때	**제8조(지급의 정지)**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삭 제>	**제8조(지급의 정지)** ①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호1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 ---------- ----------	②(개정안과 같음)
제9조(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제9조(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은 --- ---------- ---------- ----------	**제9조(장학생의 관리)**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생 략)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현행과 같음)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현행과 같음)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규칙)** (현행과 같음)	**제11조(규칙)**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여성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공·사립·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대원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3년 이상(타지역 경력포함)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범 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3.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소방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유공표창 중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6. 대원의 학비부담 능력 유무

7. 기타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수의 5/100로 한다.

②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역 및 의소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임용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2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14조(해임규정)의 규정에 해당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임용권자는 소속기관에 장학기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 설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 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의용소방대의 근무 등) ①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